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7일, 박수현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현의원)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안 제27조의2 신설 등)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지원 및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u>

업을 수행한다.

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
 2.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
원
 4. 재단이 조사·연구·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
 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

	<u>홍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u> <u>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기 위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및 후백제 9개 역사문화권 권역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 법을 근거로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한 고유한 특성을 역사문화 특화경관으로 형성·유지·발전시켜 지역의 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음¹⁾.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역사문화환경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발굴조사, 보존사업, 복원사업, 정비사업, 육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유형]

구 분	내 용
조사연구	- (기초조사) 유적·유물 및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관한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그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판단하는 학술연구 및 이를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지역연구) 역사문화권의 장소와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의 조사발굴 및 그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잠재력 등을 연구
발굴조사	- 단순 학술성과 축적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발 사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비지정 유적의 구제 발굴조사를 지양함.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마. 마한역사문화권: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사. 중원역사문화권: 충북, 강원, 경북,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아. 예맥역사문화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예맥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 자. 후백제역사문화권: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 고대 역사문화권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
보존사업	- 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상태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 및 시도문화유산 지정 등 정책적 보존행위를 포함
복원사업	- 문화유산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을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의미
정비사업	- (문화유산 정비) 복원, 수리, 수복, 보강, 이건 등을 포함하여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보호를 통해 유적의 본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 - (공간환경정비)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의 조성 및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기능의 확충·보완 및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를 의미하며, 토지·건축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을 분석하여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비를 의미
육성사업	- 역사문화권을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등의 관련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역사문화권과 연계한 지역 발전,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역사문화권 가치 인식제고 및 가치발굴을 위한 교육사업 등 역사문화권과 연계되는 지역 브랜딩 사업 등을 의미

* 자료: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국가유산청)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문화권의 개념과 공간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비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조사·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역사문화환경을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러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연구가 부족하고, 역사문화권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며,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전문성에 차이가 있음. 또한, 지역 주민주도 및 시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역사문화권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모니터링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간 협력체계 구축, 역사문화권 콘텐츠 활용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전담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제품 판로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및 활용 지원, 그리고 재단이

조사·연구·수집한 자료의 취합·정리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2021.6.10.)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 설립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연구,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주민 협력, 국내외 홍보 및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유산청은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역사문화권 사업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홍보, 판로개척,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권간 연계망 구축 및 산업화 R&D 등의 핵심 집행기능 수행을 위하여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 제27조의2제6항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가기관 산하에 설치하는 법인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3)의 취지에 맞도록 무상 사용·수익의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⁴⁾.

○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유산청 조직 및 소속기관 체계 하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별도 전문기관 건립 필요성이 낮고, 신규 산하기관 설치의 업무·기능 중복 논란을 초래하며, 국가유산청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부여군에 건립할 계획으로 동 지역에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

3)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의 내용을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 특례의 효과를 가져오려면 개정안과 함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문화유산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다수의 국립 문화·교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원활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 개편 시 ‘역사문화권과’ 신설(’24.5.)
- 지역별 학술조사 및 연구를 위해 7개 지방문화유산연구소 운영 중으로,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협업 가능

○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운영비가 향후 5년간 총 492억 800만원, 연평균 98억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건립사업비 제외, 자료:참고 1).

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1조)

(1)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의 일부를 정비사업 시행자,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또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u>권한의</u> 위임 또는 위탁)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제31조(<u>권한 등의</u> 위임 또는 위탁) ① -----

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u>지방자치단체의 장</u> 또는 <u>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 -----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u>----- --. ② <u>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u>
---	--

(2) 검토의견

○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동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⁵⁾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그러나,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 조성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 연구재단⁶⁾과 개정안에

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업시행자) ①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따른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에 대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및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 부칙

(1) 개정안 요지

- 개정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있다.

④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 부칙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설립준비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신설할 경우 이 의견과 같이 설립준비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타당한 의견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u>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수정가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일부 체계·자구 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기관 산하 법인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무상사용·수익의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한정하고,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준비를 위한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제6항 등).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7조의2제6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는”으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u> <u>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 <u>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u>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2.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재단이 조사·연구·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
 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

⑥ 국가는-----

----- 「국
유재산법」-----

국유재산-----

-----.

⑦ · ⑧ (개정안과
같음)

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⑧ 그 밖에 진흥원
의 설립, 구성과 운
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
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
립역사문화권 진흥
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
일부터 30일 이내
에 국립역사문화권
진흥원설립위원회
(이하 “설립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
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
가유산청장이 위촉
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국
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
립역사문화권진흥
원의 정관을 작성
하여 기명날인하거
나 서명한 후 국가
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
립역사문화권진흥
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
립역사문화권진흥
원의 이사장이 임
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u>⑥ 설립위원회는 제 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u>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
2. 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재단이 조사·연구·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
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권한의”를 “권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을 “장에게 위임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까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⑥ 제5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u> <u>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u> <u>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u> <u>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u> <u>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u> <u>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u> <u>(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u> <u>립한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u> <u>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u> <u>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u> <u>업을 수행한다.</u> <u>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u> <u>2. 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u> <u>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운</u> <u>영</u> <u>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u> <u>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u> <u>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u> <u>지원</u> <u>4. 재단이 조사·연구·수집한</u> <u>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u>

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

제31조(<u>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u>)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u>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u> <u><신 설></u>	<u>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1조(<u>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u>) ① ----- ----- ----- ----- -----<u>장에게 위임할</u>----- --. ② <u>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u>
---	--